옥천군 공고 제2019 - 110호

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9년 1월 30일

옥 천 군 수

1. 자치법규명 :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2. 개정이유

○ 중앙부처 및 국회에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겸비한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'전문임기제' 제도를 운영하여 정부예산 확보 등 우리군의 대외 대응력을 높이고자 함

3. 주요골자

○ 대외협력관(전문임기제) 운영 근거 신설(안제5조의2)

○ 조직 및 인사관리에 따른 그 밖에 관한 사항(별표24)

4. 의견제출

○ 「옥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 자치행정과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전화 : 043)730-3162, FAX : 043)731-1987

가. 시행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

5. 붙임

○ 옥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

○ 의견서 양식 1부.

옥천군 규칙 제 호

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대외협력관) 중앙부처 협력 및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대외협력관을 두며, 대외협력관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.

별표24의 옥천읍행정복지센터란과 군북면사무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옥천읍행정복지센터	옥천읍장	지방행정사무관,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, 지방보건사무관
군북면사무소	군북면장	지방행정사무관,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, 지방시설사무관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5조의2(대외협력관) 중앙부처 협력 및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대외협력관을 두며, 대외협력관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○ 규칙명 :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　　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규 칙 안	의　　견